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
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노인인권 보호지침

노인권리보호 (11항)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종사자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신체적 구속을 할 경우
상세히 기록하여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알려야한다.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우편, 전화와 같은 통신을 자유롭게 사용 하실 수 있어야 한다.

불만을 제기 했다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

종사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 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자기방임)



경제적 학대



유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이다.

노인 학대유형

신체적, 정서적, 성적, 재정적, 방임, 유기

신체적 학대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 학대예방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 하여야 한다.

시설의 역할	시설 종사자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시설 운영규정에 학대행위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 명문화, 철저한 교육과 지도 감독 실시•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공시•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 보급•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교육을 최소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전문가 자문실시•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 1인이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료의 학대행위를 목격한 경우, 신속히 신고(해당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하고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증거물 확보)*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 예방 및 해결*노인학대 행위의 민감성 및 방지를 위한 개인 및 직원들 간의 노력*바람직한 노인 돌봄 방법에 대한 모색 및 의견교환의자리 마련

노인 학대 대응방법

노인 학대를 목격하였거나 학대를 받을 위험이 있다고 의심될 경우에는 즉시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129에 신고한다.

감사합니다